

청담 르엘 입주자모집공고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2.09.06. 이전부터 계속 거주)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10년	3년	없음	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해당지역	기타지역				
일정	2024.09.06(금)	2024.09.19(목)	2024.09.20.(금)	2024.09.23.(월)	2024.09.24.(화)	2024.09.30.(월)	2024.10.01.(화) ~ 2024.10.04.(금) [4일간]	2024.10.14.(월) ~ 2024.10.16.(수) [3일간]

※ 공통 유의사항

- 사이버 건본주택 운영 안내사항
 ※“청담 르엘”은 사이버 건본주택(www.lottecastle.co.kr)으로만 운영되며, 분양일정 및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세부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담 르엘”은 별도의 건본주택이 운영되지 않으며, 분양사업소 전화 상담만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은 평일 오전 10:00부터 오후 5:30까지이며 공휴일은 통화연결이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발표 이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 서류제출은 우편등기로 접수 예정이며, 공급계약 체결은 사업주체에서 별도 지정한 계약장소에서 방문계약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입주자모집공고 상 계약체결 장소 및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향후 진행 일정 및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임)
- ‘청담 르엘’ 사이버 건본주택 오픈에 따른 고객 상담을 상담전화(☎1522-4370)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의 청약자격 사전관약 및 청약 가상체험을 통하여 착오신청 등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07.3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시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 (24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필요	필요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세대주 : 본 공고에서의 "세대주"는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로 한정하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에 기재된 세대주는 인정 안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 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 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제1호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등·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등·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점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0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lottycastle.co.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 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출생일부터 현재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상 해외체류 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거주제한기간이 2년인 주택은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함)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 해외체류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기간의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 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 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국내 거주로 인정하는 해외체류 예외 규정
 -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인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혼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사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신청 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신청 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신청 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신청 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 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신청 가능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APT				O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단지 유의사항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9.06.(금)**입니다. (청약자격조건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2022.09.06. 이전부터 계속 거주)**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제19조제4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해당지역/기타지역)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등기우편)	계약체결 (※방문계약)
		해당지역 (서울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기타지역 (서울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경기도, 인천시 거주자)				
일정	2024.09.19.(목)	2024.09.20.(금)	2024.09.23.(월)	2024.09.24.(화)	2024.09.30.(월)	2024.10.01.(화) ~ 2024.10.04.(금) [4일간]	2024.10.14.(월) ~ 2024.10.16.(수) [3일간]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담 르엘 분양사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기우편 접수 (*분양사업소)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101길 11, 207호 (청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계약 (*별도 계약장소)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07, 6층 (청담동)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분양사업소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해당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

※(예외1)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3항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해당제한 시작일이 혼인 전인 경우에는 당첨자발표일 기준 배우자의 해당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외2)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2항에 따라 세대원간 해당제한 적용주택에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처리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투기과열지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증빙자료 포함)'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향후 관련 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구분	기간	관계법령
전매제한기간	3년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거주의무기간	없음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 ※전매 금지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 발표일 2024.09.30.)부터 3년(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 ※「주택법」 제6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본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이 주택은 최초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는 「주택법」 제64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한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포함한다) 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으로 부기등기 될 예정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강남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제1호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분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분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lottecastle.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될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되고,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 (「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매수자(전매포함)가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공급자, 수분양자 각 1/2 납부)

- 아파트 공급계약서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발코니 확장공사 및 기타선택품목 포함)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분양계약자는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추가선택품목 계약서에 대하여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가 각 1/2씩 분담하여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분양계약자가 분담 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세액 :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제 거래가격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납부방법 : 정부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후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우체국 은행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 담당)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2024.07.30.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건축사업과-14113 (2024. 9. 5.)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34-18번지 일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15~35층 9개동, 총 1,261세대(조합 940세대, 보류지 28세대, 임대 144세대 포함) 중 일반분양 149세대
 [특별공급 64세대(일반[기관추천] 12세대, 다자녀가구 12세대, 신혼부부 25세대, 생애최초 12세대, 노부모부양 3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5년 11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및 면적

(단위 : m²,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계		
민영 주택	2024000513	01	059.7785A	59A	59.7785	22.2326	82.0111	58.2061	140.2172	27.4631	34	3	3	6	3	1	16	18	4
		02	059.9089B	59B	59.9089	23.3388	83.2477	58.3330	141.5807	27.8772	39	3	3	7	3	1	17	22	3
		03	084.7467A	84A	84.7467	28.9418	113.6885	82.5175	196.2060	38.0710	25	2	2	4	2	0	10	15	6
		04	084.9194B	84B	84.9194	30.3313	115.2507	82.6857	197.9364	38.5941	38	3	3	6	3	1	16	22	8
		05	084.5040C	84C	84.5040	28.2240	112.7280	82.2813	195.0093	37.7493	13	1	1	2	1	0	5	8	2
	합계											149	12	12	25	12	3	64	85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x0.3025 또는 공급면적(m²)÷3.3058
- ※특별공급 미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외벽면적 제외)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관리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 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비분은 인허가 변경 또는 필지 합병 및 분할, 확정측량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별 대지비분은 전체 대지면적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배분 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비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별 대지비분은 「주택법」 및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6호에 의거 건축시설의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그 대지 소유권이 주어지되,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음)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기되고, 이에 따라 세대별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이 소수점 이하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경미한 설계변경, 확정측량 등으로 인하여 다소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에 대해서는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분양사업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구분 (약식표기)		59A	59B	84A	84B	84C	합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서울특별시	-	-	1	1	-	2
		경기도	1	-	-	-	-	1
		인천광역시	-	1	-	-	-	1
	국가유공자 등		1	1	-	1	-	3
	장기복무 제대 군인		1	-	-	-	-	1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	1	-	1	2
	중소기업 근로자		-	1	-	1	-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50%)		2	2	1	2	1	8
	서울특별시 2년 미만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1	1	1	1	-	4
신혼부부 특별공급		6	7	4	6	2	25	
생애최초 특별공급		3	3	2	3	1	12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	1	-	1	-	3	
합계		16	17	10	16	5	64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 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약식표기 (주택형)	동 (라인)	층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20%)	중도금(60%)		잔금(20%)
				대지비	건축비	합계 (분양가)	계약시	1회(30%)	2회(30%)	입주지정일
								2024.12.10.	2025.04.10.	
59A	104동(3호) 105동(2호)	2층	2	1,430,685,242	308,314,758	1,739,000,000	347,800,000	521,700,000	521,700,000	347,800,000
		3-4층	2	1,460,467,189	314,732,811	1,775,200,000	355,040,000	532,560,000	532,560,000	355,040,000
		5-6층	2	1,490,331,406	321,168,594	1,811,500,000	362,300,000	543,450,000	543,450,000	362,300,000
		7-10층	2	1,520,113,353	327,586,647	1,847,700,000	369,540,000	554,310,000	554,310,000	369,540,000
		11-20층	3	1,542,490,949	332,409,051	1,874,900,000	374,980,000	562,470,000	562,470,000	374,980,000
	104동(6호)	2층	1	1,445,576,215	311,523,785	1,757,100,000	351,420,000	527,130,000	527,130,000	351,420,000
		3-4층	1	1,475,358,162	317,941,838	1,793,300,000	358,660,000	537,990,000	537,990,000	358,660,000
		5-6층	2	1,505,222,380	324,377,620	1,829,600,000	365,920,000	548,880,000	548,880,000	365,920,000
		7-10층	3	1,535,004,327	330,795,673	1,865,800,000	373,160,000	559,740,000	559,740,000	373,160,000
		11-20층	4	1,557,381,922	335,618,078	1,893,000,000	378,600,000	567,900,000	567,900,000	378,600,000
		21층 이상	3	1,587,163,869	342,036,131	1,929,200,000	385,840,000	578,760,000	578,760,000	385,840,000
	105동(5호)	2층	1	1,445,576,215	311,523,785	1,757,100,000	351,420,000	527,130,000	527,130,000	351,420,000
		3-4층	1	1,475,358,162	317,941,838	1,793,300,000	358,660,000	537,990,000	537,990,000	358,660,000
		5-6층	1	1,505,222,380	324,377,620	1,829,600,000	365,920,000	548,880,000	548,880,000	365,920,000
		7-10층	1	1,639,323,412	353,276,588	1,992,600,000	398,520,000	597,780,000	597,780,000	398,520,000
		11-20층	2	1,661,701,007	358,098,993	2,019,800,000	403,960,000	605,940,000	605,940,000	403,960,000
	104동(4호)	7-10층	1	1,490,331,406	321,168,594	1,811,500,000	362,300,000	543,450,000	543,450,000	362,300,000
		11-20층	2	1,616,945,816	348,454,184	1,965,400,000	393,080,000	589,620,000	589,620,000	393,080,000

(단위 : 세대, 원)

약식표기 (주택형)	동 (라인)	층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20%)	중도금(60%)		잔금(20%)
				대지비	건축비	합계 (분양가)	계약시	1회(30%)	2회(30%)	입주지정일
								2024.12.10.	2025.04.10.	
59B	105동(1호)	3-4층	1	1,482,515,702	319,484,298	1,802,000,000	360,400,000	540,600,000	540,600,000	360,400,000
		7-10층	2	1,542,984,572	332,515,428	1,875,500,000	375,100,000	562,650,000	562,650,000	375,100,000
		11-20층	2	1,565,691,250	337,408,750	1,903,100,000	380,620,000	570,930,000	570,930,000	380,620,000
	104동(7호)	2층	1	1,437,102,346	309,697,654	1,746,800,000	349,360,000	524,040,000	524,040,000	349,360,000
		7-10층	3	1,527,929,057	329,270,943	1,857,200,000	371,440,000	557,160,000	557,160,000	371,440,000
		11-20층	5	1,550,553,465	334,146,535	1,884,700,000	376,940,000	565,410,000	565,410,000	376,940,000
		21층 이상	4	1,580,829,035	340,670,965	1,921,500,000	384,300,000	576,450,000	576,450,000	384,300,000
	105동(6호)	2층	1	1,437,102,346	309,697,654	1,746,800,000	349,360,000	524,040,000	524,040,000	349,360,000
		5-6층	1	1,497,653,487	322,746,513	1,820,400,000	364,080,000	546,120,000	546,120,000	364,080,000
		7-10층	1	1,633,811,283	352,088,717	1,985,900,000	397,180,000	595,770,000	595,770,000	397,180,000
		11-20층	5	1,656,517,961	356,982,039	2,013,500,000	402,700,000	604,050,000	604,050,000	402,700,000
	104동(5호)	2층	1	1,391,771,261	299,928,739	1,691,700,000	338,340,000	507,510,000	507,510,000	338,340,000
		3-4층	1	1,421,964,561	306,435,439	1,728,400,000	345,680,000	518,520,000	518,520,000	345,680,000
		5-6층	2	1,452,240,131	312,959,869	1,765,200,000	353,040,000	529,560,000	529,560,000	353,040,000
		11-20층	2	1,611,104,605	347,195,395	1,958,300,000	391,660,000	587,490,000	587,490,000	391,660,000
21층 이상		7	1,641,380,176	353,719,824	1,995,100,000	399,020,000	598,530,000	598,530,000	399,020,000	
84A	106동(3호)	2층	1	1,973,012,850	425,187,150	2,398,200,000	479,640,000	719,460,000	719,460,000	479,640,000
		3-4층	2	2,014,312,677	434,087,323	2,448,400,000	489,680,000	734,520,000	734,520,000	489,680,000
		5-6층	1	2,055,612,504	442,987,496	2,498,600,000	499,720,000	749,580,000	749,580,000	499,720,000
	106동(2호)	2층	1	1,983,625,754	427,474,246	2,411,100,000	482,220,000	723,330,000	723,330,000	482,220,000
		3-4층	2	2,024,596,499	436,303,501	2,460,900,000	492,180,000	738,270,000	738,270,000	492,180,000
		5-6층	1	2,065,978,596	445,221,404	2,511,200,000	502,240,000	753,360,000	753,360,000	502,240,000
	103동(5호)	2층	4	1,962,646,758	422,953,242	2,385,600,000	477,120,000	715,680,000	715,680,000	477,120,000
	105동(4호)	3-4층	8	2,003,946,585	431,853,415	2,435,800,000	487,160,000	730,740,000	730,740,000	487,160,000
	106동(5호)	5-6층	5	2,045,246,412	440,753,588	2,486,000,000	497,200,000	745,800,000	745,800,000	497,200,000
107동(5호)										

(단위 : 세대, 원)

약식표기 (주택형)	동 (라인)	층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20%)	중도금(60%)		잔금(20%)
				대지비	건축비	합계 (분양가)	계약시	1회(30%)	2회(30%)	입주지정일
								2024.12.10.	2025.04.10.	
84B	106동(1호)	2층	1	1,968,652,510	424,247,490	2,392,900,000	478,580,000	717,870,000	717,870,000	478,580,000
		3-4층	2	2,010,528,231	433,271,769	2,443,800,000	488,760,000	733,140,000	733,140,000	488,760,000
		5-6층	2	2,052,403,952	442,296,048	2,494,700,000	498,940,000	748,410,000	748,410,000	498,940,000
		7-10층	1	2,094,361,944	451,338,056	2,545,700,000	509,140,000	763,710,000	763,710,000	509,140,000
	109동(3호)	2층	1	1,964,456,711	423,343,289	2,387,800,000	477,560,000	716,340,000	716,340,000	477,560,000
		3-4층	1	2,006,332,432	432,367,568	2,438,700,000	487,740,000	731,610,000	731,610,000	487,740,000
	105동(3호) 106동(4호) 109동(2호)	2층	3	1,947,755,785	419,744,215	2,367,500,000	473,500,000	710,250,000	710,250,000	473,500,000
		3-4층	4	1,989,631,506	428,768,494	2,418,400,000	483,680,000	725,520,000	725,520,000	483,680,000
		5-6층	4	2,031,507,227	437,792,773	2,469,300,000	493,860,000	740,790,000	740,790,000	493,860,000
		7-10층	3	2,073,382,948	446,817,052	2,520,200,000	504,040,000	756,060,000	756,060,000	504,040,000
	107동(4호) 109동(1호)	2층	2	1,884,901,068	406,198,932	2,291,100,000	458,220,000	687,330,000	687,330,000	458,220,000
		3-4층	3	1,926,776,789	415,223,211	2,342,000,000	468,400,000	702,600,000	702,600,000	468,400,000
		5-6층	2	1,968,652,510	424,247,490	2,392,900,000	478,580,000	717,870,000	717,870,000	478,580,000
	103동(4호)	2층	1	1,884,901,068	406,198,932	2,291,100,000	458,220,000	687,330,000	687,330,000	458,220,000
		3층	1	1,945,699,021	419,300,979	2,365,000,000	473,000,000	709,500,000	709,500,000	473,000,000
		4층	1	1,926,776,789	415,223,211	2,342,000,000	468,400,000	702,600,000	702,600,000	468,400,000
		5층	1	1,968,652,510	424,247,490	2,392,900,000	478,580,000	717,870,000	717,870,000	478,580,000
		6층	1	1,987,574,742	428,325,258	2,415,900,000	483,180,000	724,770,000	724,770,000	483,180,000
		7-8층	2	2,010,528,231	433,271,769	2,443,800,000	488,760,000	733,140,000	733,140,000	488,760,000
		9층	1	2,029,450,463	437,349,537	2,466,800,000	493,360,000	740,040,000	740,040,000	493,360,000
10층		1	2,010,528,231	433,271,769	2,443,800,000	488,760,000	733,140,000	733,140,000	488,760,000	
84C	107동(3호)	2층	1	1,866,143,378	402,156,622	2,268,300,000	453,660,000	680,490,000	680,490,000	453,660,000
		3-4층	2	1,907,114,122	410,985,878	2,318,100,000	463,620,000	695,430,000	695,430,000	463,620,000
		5-6층	2	1,948,084,867	419,815,133	2,367,900,000	473,580,000	710,370,000	710,370,000	473,580,000
		7-10층	1	1,989,055,612	428,644,388	2,417,700,000	483,540,000	725,310,000	725,310,000	483,540,000
	103동(3호)	2층	1	1,866,143,378	402,156,622	2,268,300,000	453,660,000	680,490,000	680,490,000	453,660,000
		3층	1	1,926,036,354	415,063,646	2,341,100,000	468,220,000	702,330,000	702,330,000	468,220,000
		4층	1	1,907,114,122	410,985,878	2,318,100,000	463,620,000	695,430,000	695,430,000	463,620,000
		5층	1	1,948,084,867	419,815,133	2,367,900,000	473,580,000	710,370,000	710,370,000	473,580,000
		6층	1	1,967,007,099	423,892,901	2,390,900,000	478,180,000	717,270,000	717,270,000	478,180,000
		7-10층	2	1,989,055,612	428,644,388	2,417,700,000	483,540,000	725,310,000	725,310,000	483,540,000

■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플러스옵션 미포함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동·호수가 배정됩니다.

- 추첨 공급세대의 당첨자는 동·호수의 위치를 반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청약예금 통장 사용 불가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시공사, 분양 마케팅사 등에 이의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승강기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공용면적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공급금액을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하며 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여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대출에 따른 주택신용보증수수료 및 인지대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에 관한 추가비용은 대출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주체는 사업주체의 알선 조건에 충족하는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알선)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20% 완납 후 중도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나 중도금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 발급제한 등) 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라도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금액(주택가격)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수령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잔금 납부일정 및 입주예정 시기는 공사 진척상황(공정률)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고,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자 본인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잔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사용검사일 이후 약정된 잔금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 일반분양세대 중 주택형 84B, 84C 타입은 서울시 건축심의 조건에 의한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는 세대로 103동 3,4호 라인 3,6,9층에 배치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조건은 판매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광고,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당첨서류는 서류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시에는 계약해제가 될 수 있으며,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내용	
공급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 이력은 배제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p>				

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2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 서울특별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 국가보훈부 서울남부보훈지청 복지과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중소기업 근로자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2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다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50%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50%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 제5조에 의거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우선공급 낙첨자,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가 기타지역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②배점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중복 선택 불가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 25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 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3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 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됩니다.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 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07.01. ~ 12.31. (당 아파트 '24.09.06.)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당첨자 선정방법

비고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 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004,50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10,351,493원	~11,139,704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405,411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12,421,792원	~13,367,645원
신생아 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004,510원~ 9,806,313원	8,248,468원~ 11,547,854원	8,775,072원~ 12,285,099원	9,563,283원~ 13,388,595원	10,351,494원~ 14,492,090원	11,139,705원~ 15,595,586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405,412원~ 11,207,214원	9,898,161원~ 13,197,547원	10,530,086원~ 14,040,114원	11,475,939원~ 15,301,251원	12,421,793원~ 16,562,389원	13,367,646원~ 17,823,526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9,806,314원~	11,547,855원~	12,285,100원~	13,388,596원~	14,492,091원~	15,595,58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 가액에 토지 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 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	--	--

4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12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거나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세대주일 것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 (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 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단독세대'란, 단독 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단계</th> <th>소득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신생아 우선공급 (15%)</td> <td>-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 </tr> <tr> <td>2단계</td> <td>신생아 일반공급 (5%)</td> <td>-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 </tr> <tr> <td>3단계</td> <td>우선공급 (35%)</td> <td>-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 </tr> <tr> <td>4단계</td> <td>일반공급 (15%)</td> <td>-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 </tr> <tr> <td rowspan="2">5단계</td> <td rowspan="2">추첨공급</td> <td>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td> <td>-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r> <td>1인 가구</td> <td>-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body> </table> <p>※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07.01. ~ 12.31. (당 아파트 '24.09.06.)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 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신생아 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105,863원~ 11,207,214원	10,723,008원~ 13,197,547원	11,407,593원~ 14,040,114원	12,432,268원~ 15,301,251원	13,456,942원~ 16,562,389원	14,481,616원~ 17,823,526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1인 가구	160% 이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비고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격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3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내 거주하거나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p>- 가점 선정 기준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가점항목</th> <th>가점상한</th> <th>가점구분</th> <th>점수</th> <th>가점구분</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8">①무주택기간</td> <td rowspan="8">32</td> <td>만30세 미만 미혼자</td> <td>0</td> <td>8년 이상 ~ 9년 미만</td> <td>18</td> </tr> <tr> <td>1년 미만</td> <td>2</td> <td>9년 이상 ~ 10년 미만</td> <td>20</td> </tr> <tr> <td>1년 이상 ~ 2년 미만</td> <td>4</td> <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 <td>22</td> </tr> <tr> <td>2년 이상 ~ 3년 미만</td> <td>6</td> <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 <td>24</td> </tr> <tr> <td>3년 이상 ~ 4년 미만</td> <td>8</td> <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 <td>26</td> </tr> <tr> <td>4년 이상 ~ 5년 미만</td> <td>10</td> <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 <td>28</td> </tr> <tr> <td>5년 이상 ~ 6년 미만</td> <td>12</td> <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 <td>30</td> </tr> <tr> <td>6년 이상 ~ 7년 미만</td> <td>14</td> <td>15년 이상</td> <td>32</td> </tr> <tr> <td rowspan="4">②부양가족수</td> <td rowspan="4">35</td> <td>0명</td> <td>5</td> <td>4명</td> <td>25</td> </tr> <tr> <td>1명</td> <td>10</td> <td>5명</td> <td>30</td> </tr> <tr> <td>2명</td> <td>15</td> <td>6명 이상</td> <td>35</td> </tr> <tr> <td>3명</td> <td>20</td> <td></td> <td></td> </tr> </tbody> </table>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 기간은 순위 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비고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Ⅲ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내용																							
대상자	<p>■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내 거주하거나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p> <p>■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1순위 신청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주일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청약통장 자격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e0e0e0;">구분</th> <th style="background-color: #e0e0e0;">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 style="background-color: #e0e0e0;">그 밖의 광역시</th> <th style="background-color: #e0e0e0;">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p>※'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p>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70%	30%

- 가점 산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분	내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합니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p>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p> <p>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p>												
	<p>■ ② 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p> <table border="1"> <thead> <tr> <th>단계</th> <th>비율</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추첨제 물량의 75%</td> <td>무주택세대구성원</td> </tr> <tr> <td>2단계</td> <td>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 <td>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td> </tr> <tr> <td>3단계</td> <td>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 <td>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td> </tr> </tbody> </table>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p>■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p>												
비고	<p>■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IV 청약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 청약신청 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2024.09.19.(목)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청담 르엘 분양사업소 : 10:00~14:00)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홈 • (현장접수) 청담 르엘 분양사업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101길 11, 207호 (청담동)
일반공급	1순위	<p>해당지역 (서울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p> <p>기타지역 [서울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인천시 거주자)]</p>	2024.09.20.(금) 09:00~17:30		
	2순위	해당지역/기타지역	2024.09.23.(월) 09:00~17:30		
			2024.09.24.(화)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홈 • (현장접수)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에 한하여 '청담 르엘 분양사업소'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를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청담 르엘 분양사업소' 방문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table border="1"> <thead> <tr> <th>청약홈</th> <th>현장접수자의 경우</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4.09.30.(월) ~ 2024.10.09.(수)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td> </tr> </tbody> </table>	청약홈	현장접수자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4.09.30.(월) ~ 2024.10.09.(수)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청약홈	현장접수자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4.09.30.(월) ~ 2024.10.09.(수)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 (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4.09.30.(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 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V 당첨자 발표 및 서류제출

□ 당첨자발표 및 서류제출 일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에 의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청담 르엘 분양사업소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동·호수) / 예비입주자(예비순번) 발표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2024.09.30.(월)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개별조회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대상 : 특별공급/일반공급 당첨자 (※예비입주자 추후 별도 통보) • 제출기간 : 2024.10.01.(화) ~ 2024.10.04.(금) •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상기 제출기간은 우편발송일 기준임 • 제출장소 : 청담 르엘 분양사업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101길 11, 207호 (청담동, 엘프론트청담) (우편번호 06075)) <p>※서류제출 방식은 등기우편 접수가 원칙이며, 상기 서류제출 기간 중 우편발송을 하여야 합니다. ※당첨유형별 제출서류는 당첨자발표일 이후 분양홈페이지(www.lottecastle.co.kr)를 통하여 안내 예정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기간 내 미접수 시 계약 포기로 간주되오니, 기간 내 필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청담 르엘 분양사업소(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으니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공급계약체결 전 입주자자격 확인 및 계약일에 계약체결 소요시간 단축을 위한 일정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동·호수 배정 추첨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의 일정 및 방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검증 제출 서류

■ [표1-1] 특별공급 자격확인 제출서류 (※당첨자는 서류제출 기간 내 제출되어야 하며, 청담 르엘 분양사업소(현장접수) 청약신청자는 특별공급 신청일에 해당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하여야 함.)

※특별공급 신청당일 청담 르엘 분양사업소 내 현장접수는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 등에만 해당하며, 해당 특별공급 서류를 완비 후 신청자격 여부 확인 후 적격한 경우에만 접수 가능합니다.

※인터넷 청약신청자는 당첨자에 한하여 서류제출기간 내 해당 서류접수를 완료하여 자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청약신청 및 당첨자는 [표1-1] '특별공급 공통서류' 외 추가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특별공급 공통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청약자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터넷 청약 신청한 당첨자는 계약 시 제출 • 청담 르엘 분양사업소 방문 청약신청자(정보취약계층)는 청약접수 및 계약 시 지참 필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청약신청(정보취약계층) 및 계약 불가	
	○		인감도장		• 인터넷 청약 신청한 당첨자는 계약 시 지참 필수 • 청담 르엘 분양사업소 방문 청약신청자(정보취약계층)는 청약접수 및 계약 시 지참 필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제출 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관계 확인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기록대조일: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 ※인터넷 청약자 및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	
		○	복무확인서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청약 신청한 경우 [군복무 기간(10년 이상) 명시]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상기 '청약자' 등본 발급 유의사항과 같이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재혼가정의 자녀(청약자의 친자녀가 아닌 자녀)로서 청약자(당첨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등본 상 당첨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청약자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불가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중 세대원이 해외에 일정기간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 여부 확인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기관추천	-	-	특별공급 대상자 증명서류	청약자	• 해당 기관의 추천서 (기관추천 명단 확인으로 같음) *해당 기관의 추천자 확인은 사업주체(청담 르엘 분양사업소)에서 가능	
다자녀가구		○	한부모가족증명서	청약자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 중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진단서(국내의료기관으로 한정) 제출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임신헌인서' 인정 안됨.) *출산이행 확인각서(양식) 청담 르엘 분양사업소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양의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 확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의 연령이 만18세 이상~만19세 미만인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신혼부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청약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청약자(당첨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 제출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T.1577-1000)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 필수
	○		소득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자(당첨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아래표-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 필수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 중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진단서(국내의료기관으로 한정) 제출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임신헌인서' 인정 안됨.) *출산이행 확인각서(양식) 청담 르엘 분양사업소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양의 경우
		○	부동산소유현황	청약자 및 세대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로 청약자와 세대구성원 전원 서류 제출 [※아래표-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기준 입증서류 참조]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청약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에 포함하는 경우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원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와 혼인 전 출생자녀를 혼인 중 출생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생애최초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자(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아래표-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참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청약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청약자(당첨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 제출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T.1577-1000)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 필수
	○		소득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자(당첨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아래표-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 필수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 중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진단서(국내의료기관으로 한정) 제출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임신헌인서' 인정 안됨.)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출산이행 확인각서(양식) 청담 르엘 분양사업소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의 경우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로 청약자와 세대구성원 전원 서류 제출 ※아래표-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기준 입증서류 참조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직계비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청약자(당첨자)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만18세 이상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청약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에 포함하는 경우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배우자	• 가구원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노부모부양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 직계존속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피부양 직계존속(노부모)과 추가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해당 피부양인 전원 제출 ※기록대조일: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만18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청약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1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해당 피부양인 전원 제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는 제외) ※기록대조일: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청담 르엘 분양사업소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위임장	청약자	• 청담 르엘 분양사업소 비치
	○		신분증, 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소명자료)	○	사업주체가 필요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무주택 소명 등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확인원,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서 정하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기타 증명 서류(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축물확인서 등) • 당첨자 및 세대원의 소유 주택 현황 사례가 다양하여 사업주체가 추가로 증빙을 요구하는 서류
			당첨사실 소명 등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 서류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청담 르엘 분양사업소 현장접수 시에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청약접수 및 당첨자 자격확인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모든 제반서류 상 등재된 모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은 반드시 표기되어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표1-2]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적		소득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매월신고 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을 수령한 경우 출산 전, 후의 급여신청서(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③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①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② 사업자등록증	① 국민연금공단 ② 세무서
	법인대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 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① 세무서 ②,③ 해당직장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행정복지센터
일용직 근로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프리랜서의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과 위촉증명서 또는 해촉증명서(필수)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직장, 세무서 ② 해당직장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 ②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필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① 분양사업소 비치 ② 세무서

■ [표1-3]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구분	해당자적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T.1577-1000)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T.1577-1000)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분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납세증명서 및 납부내역증명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T.1577-1000)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분)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① 소득금액증명 ② 납세증명서 및 납부내역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에 한함)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중 결정세액이 환급 또는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④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①,② 세무서 ③,④ 해당 직장
-------------	---	---	----------------------

※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합니다.
 ※ 상기 소득증빙서류는 세무서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재직직장)에게서 발급받은 원본만 제출 가능합니다.

■ [표1-4]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 입증서류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로 재산세 내역 발급) ②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③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 ④ 공동(개별) 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상상 주택인 경우] ⑤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주택 등)인 경우] ⑥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상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 서울특별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축물 시가표준액조회' 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서울특별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 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① 위택스(www.wetax.go.kr) ②,③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정부24 (www.iros.go.kr / www.gov.kr) ④,⑤ 행정복지센터 ⑥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추가 (해당자)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동산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전원) 발급, ※미성년자 포함)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 발급 > '부동산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단위로 재산세 내역 발급) - 위택스 > 발급 >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 > 지방세 과세증명서 ※ 전국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출력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② 행정복지센터, 정부24 (www.gov.kr)

※ 자산보유기준(3.31억원) 산정 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 또한 대상이 됩니다.

■ [표2] 일반공급 자격확인 제출서류 (※당첨자에 한하여 서류제출 기간 내 제출되어야 함)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청약자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관계 확인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기록대조일: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복무확인서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청약 신청한 경우 [군복무 기간(10년 이상) 명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상기 본인 등본 발급 유의사항과 같이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재혼가정의 자녀(본인의 친자녀가 아닌 자녀)로서 당첨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등본 상 당첨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청약자	• 국내기업 및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불가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중 세대원이 일정기간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 여부 확인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가점제 (추가서류)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 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단,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혼인관계증명서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 사유 및 발생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1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단,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청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소명자료)	○		사업주체가 필요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무주택 소명 등	•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에 따른 해당 서류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확인원,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서 정하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기타 증명 서류(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축물확인서 등) • 당첨자 및 세대원의 소유 주택 현황 사례가 다양하여 사업주체가 추가로 증빙을 요구하는 서류
				당첨사실 소명 등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p>*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p>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가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부적격당첨자)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 관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부적격당첨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사전당첨자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부적격당첨자는 청담 르엘 분양사업소 또는 별도 계약장소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및 계좌부활요청서'(현장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부적격당첨자명단 통보가 가능합니다.

VI 계약체결 안내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체결 기간	운영시간	장소
당첨자 계약체결	2024.10.14.(월) ~ 2024.10.16.(수) [3일간] [방문 예약제] *추후 분양홈페이지 예약시스템 운영	10:00~17:00	• 청담 르엘 계약장소 :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07, 6층 (청담동, 드레스가든)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명
분양대금 관리계좌	계약금 (계약시)	301-0355-4745-71	청담삼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외1
	중도금, 잔금	301-0355-4721-31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 2002호 홍길동 : 1012002홍길동, 106동 204호 홍길동 : 1060204홍길동]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당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구분	구비사항
본인 계약 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계약금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입금 확인증, 캡처 등) ②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 (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③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인감증명서 발급 시 본인발급용(본인 직접 발급)으로 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자의 경우 대리인 계약 불가 ④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외) ⑤ 정부수입인지 (※분양계약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 각각 발급) • 전자수입인지 납부증명서 (수입인지 세액기준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p>*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구매 및 납부증명서 출력 or 우체국 및 시중은행에서 구매</p> <p>⑥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증빙자료 포함)</p> <p>☞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p> <p>☞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해당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p>
<p>대리인 계약서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 계약 (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p>	<p>※ 대리계약 시 상기 구비서류와 함께 다음 서류를 추가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본인발급용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및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도장(또는 대리인 서명)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청담 르엘 분양사무소 비치)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2020.10.27.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로 계약체결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아파트 계약용, 아파트 계약 위임용 등)

※대리인 계약 시에는 인감증명서만 인정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지참한 대리인은 계약을 체결하실 수 없습니다.

■ 전자수입인지 구매 안내

구분	계약서 기재금액	총 납부 세액	계약자 부담 금액	비고
아파트 분양 계약	10억 초과	350,000원	175,000원	전세대
추가선택품목 계약 (발코니 확장 공사 및 유상옵션 포함)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0,000원	10,000원	해당 세대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0,000원	20,000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0,000원	35,000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0,000원	75,000원	
	10억원 초과	350,000원	175,000원	

※ 수입인지 구매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

- 기재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제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에 제출하기로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단,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부를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될 경우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신청서류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의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 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 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된 서류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순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단, 부적격당첨자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최대 1년간 청약 당첨이 제한됨)
 -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20.02.21.부터 개정·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 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는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한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추가선택품목 계약 등 추가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가 필요함)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체결 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신고를 위임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의 미제출 등 신고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가산세 및 제세공과금) 등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수입인지를 계약서 작성 시점에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인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의 알선에 대한 의무는 없으나, 금융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와 금융기관 간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알선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아래는 중도금 대출 알선이 가능한 경우에 관한 안내사항이며, 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의 알선, 대출금액·대출조건 및 대출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보장하거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 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계약금(분양대금의 20%) 완납 및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과 별도로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출 실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금액에 대해서는 대출취급기관과 체결한 일정에 따라 수분양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이자 후불제 조건이 아님)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전체 분양대금 중 중도금 50% 범위 내에서 중도금 용자알선을 제공할 예정이며, 한도에 따라 대출이 불가능한 나머지 중도금은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주체에서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 가능 여부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 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지정된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셔야 하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대출 불가 사유로 공급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전화상담 포함)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기준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급대금을 계약자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대출 한도 및 금리 등 조건 변경을 사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거나 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고 이와 관련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불과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 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Ⅶ 추가 선택품목 계약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제품품목, 납부금액 및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일자는 추후 통보함)

▣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약식표기		59A	59B	84A	84B	84C
발코니 확장 공사비		11,388,000	9,870,000	13,220,000	11,307,000	12,583,000
계약금 (10%)	계약시	1,138,800	987,000	1,322,000	1,130,700	1,258,300
잔금 (90%)	입주지정일	10,249,200	8,883,000	11,898,000	10,176,300	11,324,700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2024년 8월말 기준 공정률 60.0%로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 기준으로 시공되며, 사업주체에게 발코니 비확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분양가상한제 심의에 따른 금액으로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기준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아파트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등의 증가비용을 감안하여 정산된 금액입니다.
-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해 마감 재료의 특성과 규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단위세대의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제46조제4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계약하는 별도계약 품목으로 공동주택 분양가에는 미포함 되어 있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사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 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동질 또는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달로그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타입, 위치, 수량 등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발코니 창호, 유리창 표면, 벽체 기타 확장 부위는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 인 추위를 느낄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수분양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 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 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창호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 세대가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부위에 단열재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천장 돌출, 벽체 돌출, 우물천장 디자인 변경, 조명 위치 변경, 일부 배관노출 등의 마감 상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창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부위의 경우 외부창은 단창으로 설치되며, 외부측 벽체 및 일부 천장에 결로방지를 위해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 되어질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 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 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될 수 있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고,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환기 덕트 포함)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 체결 이후 관계 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포함 품목은 주택형별 또는 각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창호 등의 형태 및 사양, 제조사와 모델, 색상, 디자인 등은 기능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용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 유리 창틀 손잡이 모양 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 입찰결과에 의해 제조사 및 브랜드 개폐 방향 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생기는 침실 또는 거실 부분에 가구 배치로 인하여 창문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 시 창문과 이격 또는 난간 높이 확보를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선택품목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약식표기	선택안	설치위치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제조사
				계약시	입주지정일	
59A / 59B	기본형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실내기 5대)	6,600,000	660,000	5,940,000	LG전자
	공기청정형		8,900,000	890,000	8,010,000	
84A / 84B / 84C	기본형		7,500,000	750,000	6,750,000	
	공기청정형		9,800,000	980,000	8,820,000	

- 시스템에어컨은 발코니 확장 계약시 선택이 가능한 유상옵션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옵션에 따라서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배관 위치,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장 높이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사 진행 중인 현장여건 관계상 시스템에어컨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천정마감 내부에 유상옵션 설치를 위한 시스템에어컨용 냉매배관이 기본설치되며, 상기 공급금액은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옵션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냉매배관 및 응축수배관이 노출 시공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KB국민은행	465101-01-307036	롯데건설(주)
잔금	KB국민은행	465101-01-307049	롯데건설(주)

- 상기 계좌는 추가 선택품목 대금 납부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금 납부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장소에서 수납 불가)
- 잔금납부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하셔야 합니다.
-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멸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은 공동주택 분양계약 시 판매 진행되며, 계약내용, 납부일정, 납부계좌 및 제품 관련사항 등은 분양계약자를 대상으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주택형별 유상옵션의 상품구성 및 위치, 형태 등이 상이하므로 유상옵션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주택형의 유상옵션 품목은 설치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 및 발코니 확장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마감재/가구 선택, 가전기기 선택 등)의 가격은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시공상의 일정관계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급계약에 부수되는 마감공사 관련으로 소요 자재를 선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하고, 특히 계약 이후에는 계약 해제, 변경 시 원상회복, 변경공사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단, 수분양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경우 사업주체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 추가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계약은 본 아파트 계약 해제사유와 동일하며,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함께 해제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총 유상옵션 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됩니다. (단,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착수일(공사업체 및 자재선정 등의 업무 포함) 후에는 사업주체는 위약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수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사업주체의 귀책으로 유상옵션 선택품목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사업주체는 수분양자에게 총 옵션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계약은 본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양도/양수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계약 대금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소비자 상대업종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3조1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 미시행

※본 아파트는 2024년 8월말 현재 공정을 60.0%로 국토교통부령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및 이에 따른 국토교통부고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4호 다목에 따라 마이너스 옵션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VIII 유의사항 및 단지 내·외부 여건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에 제작된 사전 홍보자료는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변 환경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용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나, 입주자모집공고문, 공급안내문, 공급계약서를 살펴보고 현장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문, 공급안내문 및 분양홍보물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홍보영상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및 연출품목, 전시용 가구, 가전제품 등을 임의로 배치하여 시뮬레이션한 것이므로 계약 전 분양사업소에 비치된 설계도서 확인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조감도, 영상 등 홍보물에 표현된 아파트 단지 주변 상황(보도, 횡단보도, 도로, 버스정류장 등)은 향후 관할관청의 인허가 협의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점검일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 건물주주택에 표현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향후 관할관청의 인허가 협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 환경개선을 위해 조경식재계획과 각 동 필로티

- 출입구, 문주 등이 추가 설치 또는 디자인, 색채, 재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에 등재된 자료에 표현된 단조경석, 옹벽, 난간 등은 사용자 편의와 구조 및 안전상의 이유로 경미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 단위세대 VR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표현되어 있으며,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 단위세대 VR에는 추가 선택품목을 포함하여 표현되어 있으며 추가 선택품목 미선택 시 사이버 견본주택 단위세대 VR현과 우물천정, 주방가구, 침실 불박이장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사이버 견본주택에 등재된 마감재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모형,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주동의 전면 또는 측·후면에는 단지와 레벨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옹벽이나 석축, 조경석, 부대복리시설, 주변 녹지 내 보도 및 도로 등으로 인한 조망 침해, 사생활 침해가 생길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조경석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차 부서공간의 위치는 시공 시 조정 선행 변경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풍하중의 기본 설계풍속으로 설계가 되었으나 건물 형태 및 위치에 따라 외풍으로 인한 소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사업시행계획인가도서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하며, 일정 시점 이후에는 준공일정을 고려하여 적용이 불가합니다.
- 정식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공동주택관리법」 등의 관계법령에 의거) 이전에 형성된 입주자 모임(카페 등)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분양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 시 현재 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시행자, 시공사, 금융기관, 분양대행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 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일부 개인정보 포함)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일반사항

구분	내용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함. 본 계약은 '24.05.27. 사업시행인가 도면을 기준으로 하되, 그 외에 "시행자"가 조합정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진행할 수 있음. 주택법 제60조 3항에 따라 분양사업소 내 평면도(설계도면), 시방서, 마감자재 목록표를 비치하고 있으며, 청약 및 계약 전 도서 열람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계약 체결 전 평면도, 배치도, 사업지 주변현황 등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매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공사 중 현장여건 반영 및 품질개선을 위해 적절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경미한 변경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관리비 부과는 입주 후 관리사무소에서 진행예정임.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전실)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 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하고 개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하자발생 시 기존 설치 마감재에 대하여 하자보수가 제외될 수 있음.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구조 변경으로 인한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가 제외될 수 있음. "계약자"(“입주자”)가 본 계약 외 발코니 확장부위에 개인적으로 시공,설치한 바닥단열 및 마감재, 창호, 실외기실 루버 등의 제반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사"와 무관함.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은 실시공 현황,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준공도서 등에서 제시한 사항을 기준으로 함.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기반시설공사 지연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지연시에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입주전 별도 안내 예정임.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음. 단지 내 (공용)보도는 준공 이후 입주민이 관리하여야 함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 일반조항에 의거, 해약 조치됨. 본 공고문에 포함된 인증서는 예비 인증서로, 최종 인증서 등급이 달라지거나, 각 항목별 점수가 달라질 수 있음. 본 단지의 분양아파트와 재건축 소형주택은 택지 구분없이 계획 되었으며, 단지내 모든 부대복리시설은 재건축 소형주택 입주민과 공동 사용함.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사업주체"의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특히 대지의 이전 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가 별도로 이행될 수 있음.) 학교배정 등 교육정책은 관할지역 교육행정기관의 정책에 따름 계약 전 분양계약서의 기타사항,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 후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설계 관련 주요 고지사항

■ 개방형 발코니 (별칭-OPEN 발코니)

설치동	약식표기 (주택형)	정보	개방형발코니 설치 호수 및 위치
103동 (일반분양 기준)	84C	설치 호수	303호, 603호
		설치 위치	침실2에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84B	설치 호수	304호, 604호, 904호
		설치 위치	침실2에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된 세대의 아래층은 개방형 발코니에 의해 일조 및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 개방형 발코니 호실 및 위치는 분양홈페이지 상 동호배치도 및 세대 평면도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방형 발코니 설치 세대의 해당 호실 창호는 기본 세대와 창호의 규격 및 형태가 상이 하오니, 반드시 분양사업소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 고지사항

구분	내용
도로 및 기반시설	• 당 사업장은 청담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특별계획구역1로 지정되어 있으며, 공동주택 외부에 표현된 도로, 공원, 주차장, 단독주택 등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계획되어 있고, 상위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당 사업장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동측, 북측에 공원이 설치되어 있으며, 단지 남측으로는 약 30m 도로, 단지 서측으로 약 12m 도로가 설치 예정임.
	• 당 사업구역 동측~북측에 있는 공원은 현재 인허가 진행 중으로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CG, 모형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한 것이며 최종 인허가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당 사업구역 인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경사도 및 레벨계획, 형태, 디자인, 시설과 용지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당 사업구역 도로 및 기반시설에 대한 CG, 모형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추후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 당 사업구역 대지 경계선 인근 개발계획(조경, 토목, 기타 구조물 등의 계획일체)은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사업승인 변경이 수반 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변경 시 개별 동의를 받지 않음.
공동 단지 주변도로	• 단지 남측에 약 30M 도로가 설치될 예정임. 보행 가능한 보도 및 공공자전거 대여소가 단지측으로 설치예정이며, 도로변에는 별도의 방음시설 및 난간대가 설치되지 않고 보도블록 및 시설을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도로에 인접한 주동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서측에 약 12M 도로가 설치될 예정임. 보행 가능한 보도가 단지측으로 설치 예정이며, 도로변에는 별도의 방음시설 및 난간대가 설치되지 않고 보도블록 및 시설을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이로인하여 도로에 인접한 주동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남측 및 서측 도로는 각각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 단지 주출입구 주변 회전 교차로 및 청담삼익상가 북서측에 면한 도로는 교통영향평가 등의 인허가 예정사항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서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선형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CG, 모형 등에 표현된 단지 외부의 주변 도로 등은 현재 상황 또는 설치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음.
단지 주변시설	• 단지 동측~북측에 공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접한 주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과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동측~북측에 공원의 경우 분양홍보물에 이해를 돕기위해 표현되었으며, 해당 구간은 사업주체의 시공범위로 개설시점 및 운영방식에 대해서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북서측 상가 인접경계면 지하구조물이 일부 매설되어 있으며, 향후 상가관련 공사 진행에 따른 소음 및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동측~북측 공원과 이에 면한 도로(올림픽대로) 사이에는 인허가 조건인 도로변 소음저감대책으로 방음벽(약9m)이 설치될 예정이며, 디자인 및 높이는 인허가 절차에 따라 결정 예정임. 이로 인하여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과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본 공사시 현장여건 및 인허가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단지 북서측에 상가와 공동주택이 위치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인접한 주동에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과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가 및 공동주택 개발에 따라 여건이 달라질 수 있음.
	• 인접 도로 하부에 도시철도 7호선이 운행(환기구 가동 포함) 중이며, 이에 따른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대지경계	• 단지 남동측에 위치한 초등학교로 인하여 인접한 주동에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과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에 의한 대지지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담장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정주환경 보호 등을 위해 높이 1m이하의 투시형 목재 또는 식재 등의 마운딩으로 조성할수 있으나 이는 상위계획 변경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외곽 경계에 별도로 웬스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 당 사업장은 청담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특별계획구역1 전체 구역면적 61,823.90㎡ 중 동측 공원 8,757.00㎡, 서측 도로 1,968.90㎡를 기부채납하여 대지면적(사업부지) 51,098.00㎡로 사업계획승인을 득 하였음.
인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 현장은 2014년 08월 최초 건축허가사전승인(건축심의)신청(2015년 3월 완료), 2015년 8월 최초 사업계획승인 접수(2015년 12월 완료)를 한 사업장으로, 경과규정의 적용 가능한 법적기준(친환경관련 포함)에 대해서는 최초접수일(혹은 완료일) 당시의 기준을 준수하였고, 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기준 이상을 적용 하였음. • 공동주택의 경우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으로 설계되어 높이제한 등의 건축제한을 120% 범위에서 완화받아 사업계획승인을 득 하였음. • 공동주택 본공사 시,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등 인허가 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분양 후 경미한 변경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별도로 사전고지 않음. • 분양 시 계획된 야간경관조명 계획은 서울시 좋은빛 심의의견 및 경관심의의견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단지 배치, 단지 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시설물, 포장 등),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시 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인허가 절차상의 각종 인증 및 심사를 통해 일부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단위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양홍보에 사용된 카달로그 및 각종 인쇄물, 기타 홍보물에 삽입된 CG(광역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조경도, 주민공동시설 및 단위세대 입체도와 평면도 등)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또한,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계약 전 홈페이지 내 분양 홍보물을 참고하시어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마감재 등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분양 홍보물의 경우 확장형 기준으로 제작되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분양 홍보물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추가선택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표현되어 있을 수 있으며, 본 공사시에는 사업승인도서 및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되어 분양 홍보물과 상이 할 수 있고 전시품으로 표현된 부분은 제공되지 않음 • 분양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사업계획(변경)승인 도서에 준하며, 청약 및 계약 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람,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람. 단, 건축 관련 도서는 열람만 가능하며, 복사 등은 불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람 • 분양 홍보물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허가 및 시공 과정상 경미한 설계변경이 될 수 있고 시공 시 다소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음 • 분양홍보물, 카달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결로방지를 위해 실외기실 측벽 벽체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이에 따라 발코니 면적이 축소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분양 홍보물, 카달로그 등에 적용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카달로그 및 홈페이지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하게 표기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일부 분양홍보물은 가구, 가전 기기 등 유상옵션 품목이 포함된 이미지로 작성될 수 있으며, 유상옵션 품목은 타입별, 주택형별에 따라 적용 가능한 품목의 차이가 있으니 공급간지 및 유상옵션 품목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공급안내문 및 카달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컴퓨터그래픽(CG)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세부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계약체결 시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CG, 일러스트, 이미지컷 및 개요 등)은 사전 홍보 시 예비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또한 홍보과정에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등의 계획 또는 예정사항은 추후 관련 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 가능하오니, 관련 사항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한 후 계약을 하여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이미지 컷 및 전시모형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제작되었음 •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관련 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 가능 하오니,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함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아파트 공급계약 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 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부로고사인, 외부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 내 조경,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 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됨 • 본 제작물은 광고·홍보물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고 현장을 꼭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홍보물 및 홈페이지에서 제시된 마감자재 및 제품은 자재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동질 또는 동급 이상의 다른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평면도 이미지컷(CG)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청약 및 계약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 바람에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본 홍보물상의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건축물의 외관 및 색채계획, 조경 식재 및 시설물, 문주 등의 기타시설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또한, 단지를 제외한 기타 사항(개발계획, 주변건물 현황, 산, 조명, 외부식재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마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와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독점, 품질, 품귀, 업체의 부도,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분양홍보물 및 마감자재 목록표를 참조하시기 바람. • 공장생산 자재(타일,벽지,시트,인조석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 및 시방서에 의해 결정됨. • 천연자재(석재, 목재 등)는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로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 한정함. • 본공사시 세대 내부 마감자재의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색상 및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음. • 엔지니어드스톤 및 인조대리석으로 시공되어 있는 제품은 제작특성상 제조일자에 따라 패턴과 색상, 베인이 균일하지 않아 본공사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강마루 특성상 반복되는 패턴으로 인위적인 느낌이 들 수 있으며, 본공사시 유사 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음. • 벽체 도배 마감재는 봉투바름에 의한 부착으로 테두리와 매립박스 주위로만 접착이 됨. 그 외 부위는 들뜸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공법상 특성이며 하자가 아님. • 타 지역의 타사 또는 사업주체 분양 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 등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사이버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사업주체의 다른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 내력벽으로 변경될 수 있음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 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시공사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람. • 동·호수 당침 시 동일한 주택형 및 평면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계약 전 세대 내부 배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사업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외관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 단지의 주동 외관 색채, 외벽 줄눈 특화외장재의 종류 및 적용 위치, 옥상구조물의 형태 및 마감재, 옥상 태양광집광판의 위치 및 각도, 주동 출입구의 형태 및 마감재, 단지 출입구 문주의 형태 및 마감재,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로 및 패턴디자인, 옥상장식물, 몰딩, 창틀 모양 등) 등 단지 외관의 전반적인 디자인이 사업주체 결정에 따라 착공도서 및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계획(안) 대비 디자인 개선을 목적으로 변경 및 추가되어 시공될 수 있음. 단, 인허가 과정상 협의 의견 및 본 공사시 디자인 개선을 목적으로 추가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개인의 취향에 따른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또한, 주동 외관 석재는 자재의 특성상 균일한 무늬, 패턴, 색상, 베인으로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자재의 균일한 무늬, 패턴, 색상, 베인이 아닌 자재 자체의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 한정함. • 101동, 102동, 103동, 104동과 105동, 106동, 107동, 108동, 109동의 외관 석재는 석재의 무늬, 패턴, 색상, 베인의 형태를 다르게 적용하였으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단지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동별 주동 출입구는 동별 특성에 따라 디자인 및 높이, 폭, 동선 등이 상이하며 주동 출입구의 형태, 외측벽선에서 돌출된 구조로 인해 인접세대에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음 • 본공사 시, 시공여건 고려 혹은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공동주택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로 및 패턴디자인, 옥상장식물, 창틀모양 등), 지하출입구, 선근, 외부시설물 (난간 디테일, 문주, 천창, 드라이에어리어 DA), 조경디자인(식재, 시설물, 구조물, 조경바닥패턴 등), 주차장 구조체 공법(DECK PLATE 또는 PC공법)은 경미한 변경 등 인허가 절차를 통해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부위별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 및 의견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 • 주동의 동출입구, 저층부 101, 109동은 3개층 높이, 102, 103, 104, 105, 106, 107, 108동은 5개층 높이(필로티, PIT 포함)로 지정석재 마감임 및 지정광판 혼합마감이며 커뮤니티시설의 외부 입면은 지정석재 마감 및 지정강판혼합 마감임. 단, 외관디자인 변경으로인한 인허가진행 시 외부 입면 마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재료의 색상 및 디자인은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음. • 저층부 세대는 단지 주변도로, 단지 내 비상차로, 문주, 부대복리시설, 가로등, 차량출입구 및 진출입 차량의 전조등에 의해 소음, 조망 등 사생활 침해 및 야간 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필로티 내부에 기둥, 벽체 등은 지정석재로 시공예정이며, 동별 여건에 따라 부위별 마감재 색상이 상이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주변도로, 단지 내 차로 및 비상차로, 지하주차장 출입구, 지상주차장, 단지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에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각종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동의 저층부 세대는 단지 주변도로, 단지내 차로 및 비상차로, 문주, 주차출입구(램프), 부대시설, 가로등, 진출입 차량의 전조등 등에 의해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과 프라이버시 침해 및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의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빗공해 저감을 위하여 일부 차폐형 식재, 시설물이 설치되는 경우 세대의 일조와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소방안전매트 구간과의 간섭, 소방차 등 각종 서비스 차량동선의 간섭으로 인하여 빗공해 저감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2동 34층에 작은도서관과 108동 34층 경로당의 경우 공적인 공간으로 임의로 폐쇄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외부E/V는 102동, 103동 인근 1개소, 106동, 107동 인근 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통행으로 인한 인접 동의 저층부는 조망권 간섭,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외부계단은 101동, 102동 인근 1개소, 102동, 103동 인근 1개소, 106동, 107동 인근 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통행으로 인한 인접 동의 저층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8동 옥상층에는 고가수조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배기구가 존재하므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옥상부에 의장용 구조물, 태양광설비(집광판, 인버터), 공용TV안테나, 이동통신안테나, 피리침, 경관조명, 인명대피공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특히, 안테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동통신설비구축을 위해 옥상에 설치됨. 추후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 단지 내 레벨이 상이하여 단차가 생기는 구간에 대해서는 조경석 쌓기, 화계, 옹벽, 사면처리 등이 계획될 수 있으며, 카달로그 및 모형, CG등 분양 홍보물에 표현된 조경석, 옹벽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시공사 아파트의 현장여건 등에 따라 구간, 높이 등의 계획이 상이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옹벽, 조경식재, 마운딩, 플랜터 등 구조물 구성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에 프라이버시, 조망, 일조에 침해가 있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설치되는 수경시설은 물놀이형이 아닌 관상용이며, 별도의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단지는 소방 공사를 제외한 내진설계가 적용되어 있으며 내진능력등급 MMI VII등급, 최대지반가속도 0.169(g)로 설계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패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블루투스 연동은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수신거리 및 기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패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연동은 스마트폰의 OS정책에 따라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중층 옥상부에는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에 준하여 태양광집광판 구조물이 설치되어 공용부 전력으로 활용되어질 예정이며, 빛반사 등에 의한 눈부심 및 풍음, 태양광인버터장비소음 등이 일부세대에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이에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태양광집광판의 설치 위치 및 각도는 향후 본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네트워크 서버의 경우 고정IP(전용회선)사용으로 관리 비용이 발생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조경식재, 야간조명 및 홈네트워킹설비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후 관리규약에 따르며 조경공간의 개선을 위하여 시설물 계획이 추가 계획될 경우 이로 인한 유지, 보수, 관리비가 발생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설치되는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주민공동시설 및 대지 내 공지, 소방도로, 보행가로변, 주차관제 출차주의, 공공보행통로에 인접한 세대에는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필로티 내부 혹은 주차입구 인근에 자전거 보관소가 인접하게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 조망권 및 소음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현장여건 및 미관, 사용성 개선을 위해 위치,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공동주택용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지하2층에 동별로 1개소씩 총 9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각 동출입구와 쓰레기분리수거장의 거리가 상이 함. 세대 내 음식물쓰레기 이송설비 투입구 외에 지상1층 외부공간에 지하로 이송되는 대용량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4개소가 추가로 설치되며, 이에따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경관저해,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각 쓰레기분리수거소의 위치 및 규모는 시공여건에 따라 분양시와 다소 상이해질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조경시설물, 주차관제시스템, 도로선형, 쓰레기분리수거장, DA, 탐라이트 등은 본공사 시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해 위치, 디자인, 구조, 높이,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선형, 폭, 경사 및 식재계획, 포장계획, 시설계획 등 전반적 조경계획은 상품 개선을 위해 변경될 예정임. 인허가와 관련된 주요 공간(놀이터, 운동공간, 쓰레기분리수거함, 소방정차구간 등)의 위치는 크게 변경되지 않으나 그 외 공간별 규모, 형태, 시설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와 무관한 일반 공간(휴게공간, 보행자전용동선 등)의 계획은 위치를 포함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조경계획의 개선안이 입주자의 개인취향 및 의견과 상충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소방안전매트 설치가 권장될 경우 해당 구간에 식재가 제한되어(교목 및 관목 식재 불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가로경관에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각종 인입(상·하수, 도시가스, 한전 등)계획은 인허가 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소방 전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선구간에는 잔디블록이 적용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차량진입구와 연결되는 회차공간에는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드랍오프존 및 대기를 위한 공간(키즈스테이션)이 조성되며 이로 인하여 인근에 통행 불편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 출입구를 제외한 단지 내 도로는 비상차로로 입주 후 단지운영에 따라 우편물, 택배, 이삿짐, 구급 차량 등이 단지 내 비상차량 동선을 통해 진입할 수 있음. 단, 지하주차장에 택배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천정고를 적용함. (단, 택배차량이 통행 가능한 천정고의 경우 부출입구로부터 진입이 가능한 지하 2층에 적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엘리베이터 홀의 창호는 건축법 및 소방법에 따라 전층 개폐가 가능한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단실 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인허가 조건에 따라 개폐가 불가능한 고정창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환기를 위하여 일부층에는 개폐가 가능한 창호가 설치되고, 이경우는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조경, 창호형태, 입면장식물딩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1층에서 E/V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1동 하부 지하PIT~지하4층에는 수영장 기계실, 예비전기실이 위치, 104동 하부 지하4층~지하3층에는 기계실, 저수조가 위치, 105동 하부 지하3층~지하2층에는 빗물저수조가 위치, 106동 하부

	<p>지하2층에는 부대복리시설 펌프실이 위치, 107동, 108동 하부 지하3층~지하2층에는 사우나기계실, 지열 기계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기계실, 부대복리시설 화장실 펌프실이 위치, 109동 하부 지하2층에는 부대복리시설 펌프실이 위치하며, 이와 연접한 주동의 인접세대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으로 생활권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음. 단, 본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주동 하부 지하2층~지하1층에는 제연휀룸 및 동전기실이 계획되어 있으며, 각 주동 하부 지하4층~지하1층에는 지하주차장 휀룸 등이 계획되어 있어 이와 연접한 주동의 인접세대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으로 생활권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음. 단, 본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위치한 D.A 및 부대복리시설 실외기실 그릴창호 주변 보행공간은 소음 및 열풍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동은 주변 건물 및 구조물, 기존 건물의 재개발, 재건축 및 증축, 단지 내 인접 동 및 같은 동 다른 라인에 의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필로티 및 외기에 노출되는 부위에는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함 • 공용부의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공용부의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4동, 105동, 106동, 107동 외관에 설치되는 LED 조명 등으로 인해 인접세대에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경관조명은 인-허가과정 및 관련심의 의견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모든 동에 동일한 형태의 외관 및 경관조명이 설치될 수 없음을 양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공사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별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 주차장 경사로 등), 어린이집, 조경시설,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 보관소, 지하주차장 주차램프, 단지 주 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 침해, 소음, 빛 공해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경관조명, 위성 안테나, 공청 안테나, 태양광 집광판, 이동통신 중계기, 항공 장애등, 피뢰침, 방공호 및 대공포 진지 군사시설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배치도 상에 표현된 D.A의 위치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스프링클러 배관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수리계산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각종 옥탑과 지하층에 이동통신용 안테나 및 중계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사업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설계도면에 반영된 공용설비(영구배수, 동 지하 엘리베이터홀 에어컨 등)로 인한 제반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됨 • 105동~109동 B1F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되는 창호 및 금속마감, 조명형사인등에 의해 조망, 눈부심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필로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동별 지상1층에는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동의 필로티 내부계획 및 마감높이는 상이할 수 있음. 102동 필로티 중 일부 외부공간은 레벨 계획 상 102동 공용 홀을 통해 진입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음. 일부세대는 소음, 진동, 조망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주는 단지 남동측 단지 주출입구, 단지 남서측 부출입구에 경비실 및 키즈스테이션과 통합 게이트형으로 2개소가 계획되어 있음. 단, 시공여건 고려 혹은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부위별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 및 의견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
단지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 단지에 총 2개소의 단지 차량출입구(단지 남동측 107동 하단, 단지남서측 104동 상단)가 있으며, 인허가 및 공사과정에서 출입구와 출입 관제시스템의 일부 위치 및 형태, 개소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공동주택 주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1동 하부 지하4층에는 실내수영장이 계획되어 있고 지상1층에 수영장으로 연결된 별도의 출입구가 있으며, 전용 엘리베이터가 지하4층~지상1층에 정착하여 일부세대는 소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101동 남측으로 수경시설을 포함한 휴게정원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 세대는 진동, 소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1동 동측~북측으로 공원, 방음벽(약9m)이 계획되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조망, 소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1동 북서측 지상1층에 어린이놀이터 및 수영장 선권이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101동 남서측 지상1층에 음식물쓰레기수거함이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102동 남동측 지하4층~지하2층에 주차램프가 계획되어 있어 진동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102동 남측 지하2층에 선권 및 연결계단이 계획되어 있으며, 북서측 지상1층에 커뮤니티 광장이 계획되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102동 남측으로 수경시설을 포함한 휴게정원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진동, 소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2동 북동측 지상1층에 음식물쓰레기수거함이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2동 34층에 작은도서관이 계획되어 있고 지상1층에 이를 이용하기 위한 별도의 출입구가 있으며, 전용 엘리베이터가 지하4층~지상1층 및 지상34층에 정착하여, 일부세대는 소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3동 북측 및 북서측에 커뮤니티 광장 및 어린이놀이터가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3동 서측 지상1층에 음식물쓰레기수거함이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3동 남측으로 수경시설을 포함한 휴게정원, 북서측으로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진동, 소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4동 북서측 지하2층~지상1층에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기 위한 주차램프 및 지붕구조물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에 프라이버시 침해 및 조망간섭, 차량전조등, 주차관제 출차주의 등에 의한 빛공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4동 서측~남측 지상1층에 게이트형 문주가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에 프라이버시 침해 및 조망간섭, 빛공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4동 남동측으로 수경시설을 포함한 휴게정원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진동, 소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4동 옥탑2층에 정화조배기덕트가 설치되어 일부세대는 소음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5동 북서측 지하4층~지하2층에 주차램프가 계획되어 있어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5동 북측 지하1층 데크에 관리사무소 및 펌웨어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세대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5동 동측 지상1층에 인접하여 유아놀이터 및 별도의 어린이집이 계획되어 있어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5동 동측 지상1층에 음식물쓰레기수거함이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5동 서측 지상1층에 게이트형 문주가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에 프라이버시 침해 및 조망간섭, 빛공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6동 지하1층 데크 서측에는 관리사무소가, 북측에는 주민카페 및 수경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세대는 소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6동 남측 지상1층에 인접하여 유아놀이터 및 별도의 어린이집이 계획되어 있어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6동 남측 지상1층에 음식물쓰레기수거함이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6동 동측 지상1층에 게이트형 문주가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에 프라이버시 침해 및 조망간섭, 빛공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6동 북측과 북서측으로 휴게정원, 남서측으로 유아놀이터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7동 동측 지하3층~지상1층에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기 위한 주차램프 및 지붕구조물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에 프라이버시 침해 및 조망간섭, 차량전조등, 주차관제 출차주의 등에 의한 빛공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7동 서측 지하1층 데크에는 주민카페 및 수경시설이, 북측에는 실내운동시설(피트니스센터, 사우나 등)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세대는 소음 및 진동,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7동 하부 지하3층~지하1층에 실내운동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별도의 엘리베이터가 정착하여, 일부세대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7동 남측~동측 지상1층에 게이트형 문주가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에 프라이버시 침해 및 조망간섭, 빛공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7동 북동측으로 어린이놀이터, 서측으로 휴게정원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7동 북측 지상1층에 어린이놀이터가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7동 3,4,5호 세대 지상1층에 단지레벨 계획에 따라 장애인 경사로 및 출입계단이 설치될 예정에 있으며, 인-허가과정 상 협의의견 및 본공사 시 디자인개선을 목적으로 추가 변경될 수 있고, 추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개인의 취향에 따른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8동 남측 지하3층~지상1층에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기 위한 주차램프 및 지붕구조물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에 프라이버시 침해 및 조망간섭, 차량전조등, 주차관제 출차주의 등에 의한 빛공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8동 지하1층 데크 서측에는 실내운동시설(피트니스센터, 사우나 등)이, 북측에는 다목적실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세대는 소음 및 진동,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8동 남측 지상1층에 게이트형 문주가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에 프라이버시 침해 및 조망간섭, 빛공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8동 북서측으로 어린이놀이터, 북동측으로 휴게정원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8동 지상2층에 청소년도서관이, 지상34층에 경로당이 계획되어 있고 지상1층에 이를 이용하기 위한 별도의 출입구가 있으며, 전용 엘리베이터가 지하3층~지상2층 및 지상34층에 정착하여, 일부세대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8동 옥탑1층에 고가수조실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배기구가 설치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9동 지하1층 데크 서측에는 다목적실과 경로당이, 동측에는 골프연습장을 이용하기 위한 별도의 출입구가 있고 전용 엘리베이터가 지하1층~지하4층에 정착하며, 이로인하여 일부세대에는

	<p>소음 및 진동,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9동 북서측으로 휴게정원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9동 동측~북측으로 공원, 방음벽(약9m)이 계획되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조망, 소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9동 지상1층에 작은도서관 및 게스트하우스가 계획되어 있으며, 작은도서관 지붕에 실외기가 설치될 예정에 있어 일부 세대에 소음 및 바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109동 지상1층에 단지레벨 계획에 따라 부대복리시설 출입을 위한 장애인 경사로 및 출입계단이 설치될 예정에 있으며, 인-허가과정 상 협의의견 및 본공사 시 디자인 개선을 목적으로 추가 변경될 수 있고, 추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개인의 취향에 따른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 102동, 108동 옥탑지붕층에는 건축법에 따라 인명구조 공간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인접한 주동의 일부 세대에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1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및 109동 옥상에 식재를 포함한 옥상정원이 조성됨. • 102동 지상27층~지상28층, 103동 지상27층~지상28층, 107동 지상27층~지상28, 108동 지상26층~지상27층에 그린 테라스가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 세대(테라스 하부세대)는 소음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그린테라스는 인-허가 과정상 협의 의견 및 본 공사시 디자인 개선을 목적으로 추가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개인의 취향에 따른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 101동, 102동, 103동, 108동 3, 6, 9, 12, 15, 18층 일부 세대에 개방형 발코니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는 건축심의 당시 도시 경관 디자인을 고려하여 계획된 사항으로 추후 위치 및 형태, 크기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개인의 취향에 따른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 주동 엘리베이터 대수, 용량, 속도는 최종 사업승인도서의 기준에 따라 시공될 예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전 필요시 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 주동 주변 또는 주동과 접하여 음식물 쓰레기수거함, 드라이어리어(DA), 탭라이트, 자전거보관대 등이 설치되어 소음, 진동, 냄새, 매연, 조망, 눈부심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각 주동 일부구간에는 디자인 커튼월록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눈부심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마감재의 색상은 변경될 수 있음. • 동 하부 지하1층 제연헬룸이 계획되어 주동에 인접하여 제연헬룸 급기 DA가 지상층에 설치되며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추후 실시공사 헬룸의 기능상의 이유로 DA가 추가 혹은 이동 설치될 수 있음. • 각 동 인근 지상층에는 DA(제연 DA 포함), 주차장 급배기그릴 등 저층부 세대와 인접하여 설치되어 소음 및 냄새,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생길 수 있음.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지하 4층~1층까지 4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하주차장의 진출입구는 단지내 총 2개소로, 단지 남동측 107동 하단 1개소와 단지 남서측 104동 상단 1개소로 계획되어 있음. • 지하주차장은 각 주동의 위치 및 주차 진출입구, 램프의 위치,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관련공간 계획으로 인해 주동별 주차장 이용에 거리와 동선의 불편함이 따를 수 있으며 계약 전 필요시 인허가 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 각 동 지하층 엘리베이터홀 제습 및 냉난방을 위한 천정형 시스템에어컨용 실외기 배치로 인해 지하주차장의 보행자의 동선간섭 및 팬 가동에 따른 바람이 전달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본공사 시 용도, 규모, 구조, 동선, 주차면위치, 디자인,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주차공간의 일반주차 폭 2.5M, 확장주차 폭 2.6M, 경형주차 폭 2.0M로 계획되었으나 시공 오차에 따라 폭이 축소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지하4층~지하1층) 헬룸에 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이 설치되어 차량 및 보행자에게 팬가동에 따른 바람이 전달될 수 있으며, 인접 주동의 저층 세대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으로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 본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공동시설 내 기둥이 추가되거나 공간계획과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음 • 지하 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의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특성상 주차장은 지하 4층~지하 1층까지, 주차대수는 총 2301대 (경차 및 장애인주차, 전기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포함)로 계획되어 있으며, 향후 인-허가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구조는 공사 여건에 따라 PC 또는 데크로 변경될 수 있으며, 피트(PIT) 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급속 8개소, 완속 96개소로 총104개소 설치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12대를 별도로 계획하였음. • 인허가 과정상 협의의견 및 본 공사시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 및 충전 대수는 달라질 수 있으나, 추가설치는 불가함. 이로 인해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 일체는 동선, 기능, 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에 의해 본공사시 내·외부 디자인과 용도, 규모, 구조, 높이, 재료, 창호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각 부대복리시설을 이용하는 전용 출입구 및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로 인해 인접한 저층 일부 세대의 조망권, 일조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 추후 본 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경비실은 단지 남측 주출입구, 단지 서측 부출입구에 게이트형 문주와 통합형으로 2개소가 계획되어 있으며, 경비실과 주차차단기(차량 출입구)의 위치 및 규모, 개수, 디자인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은도서관-1(독서실 등)이 109동 1층에, 작은도서관-2(카페&북라운지)이 102동 34층에, 청소년도서관이 108동 2층에, 경로당이 108동 34층에 계획되어 있고 인허가 과정상 협의 의견 및 본공사 시 디자인 개선을 목적으로 추가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개인의 취향에 따른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상기 부대복리시설은 건축심의 당시 지역에 개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부대복리시설로 용적률 완화를 인정받은 시설로, 별도의 절차없이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폐쇄 조치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 관리사무소 및 펫케어시설이 105동~106동 사이 지하 1층 데크에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인접한 세대에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 추후 본 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작은도서관-1(독서실 등)은 109동 하부 지상1층에 설치되며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이로 인해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작은도서관-2(카페&북라운지)는 102동 지상34층에 설치되며 지상1층에 별도의 출입구가 있고, 지하주차장 수직 연결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됨. 커뮤니티시설 이용자 이동동선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로 인해 인접한 세대(부대시설 하부세대)에 소음 및 진동, 냄새,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청소년도서관(레슨실, 스튜디오, 멀티미디어실 등)은 108동 하부 지상2층에 설치되며 지상과 지하주차장과 수직 연결되는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이 설치됨. 이로 인해 인접한 세대에 소음 및 진동, 냄새,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주민카페(다이닝 카페)가 106동 하부 지하1층 데크에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인접한 저층 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주방시설로 인하여 지하주차장 이용시 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 실내운동시설(홀, 피트니스, GX룸, 남녀사우나 등)이 107동~108동 하부 지하1층 데크에 설치되며, 지하주차장과 연결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됨. 이로 인해 인접한 세대에 소음 및 진동, 냄새,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목적실이 108~109동 사이 지하1층 데크에 설치되며 지하주차장과 연결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됨. 이로 인해 인접한 세대에 소음, 냄새,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경로당-1이 108~109동 사이 지하1층 데크에 설치되며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이로 인해 인접한 저층 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경로당-2는 108동 지상 34층에 설치되며 지상1층에 이를 이용하기 위한 별도의 출입구가 있고, 전용 엘리베이터가 지하3층~지상2층 및 지상34층에 정차하여, 일부 세대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커뮤니티시설 이용자 이동동선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로 인해 인접한 세대(부대시설 하부세대)에 소음 및 진동, 냄새,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골프연습장이 109동 하부 지하2층과 지하4층에 설치되며 지하1층 데크에 이를 이용하기 위한 별도의 출입구가 있고, 지하주차장과 연결되는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이 설치됨. 이로 인해 인접한 세대에 소음 및 진동, 냄새,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실내수영장은 101동 하부 지하4층에 설치되며 지상1층에 별도의 출입구가 있고, 지하주차장 수직 연결되는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이 설치됨. 이로 인해 인접한 세대에 소음 및 진동, 냄새,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게스트하우스는 109동 하부 지상1층에 설치되며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이로 인해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 및 진동, 냄새,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어린이집은 105동~106동 사이 남측에 별동으로 지상1층에 설치되며,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이로 인해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주차입구 인근 차량 회차공간에 인접하여 유치원 및 학원 등 통학차량의 승하차 대기공간인 '키즈스테이션'(추후 명칭 변경 가능)이 설치됨. 어린이 실내놀이공간이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람. •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 일체의 운영 및 유지 관리는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하여야 함. •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의 이동식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음. • 경로당, 어린이집에 현관장 및 주방장이 제공되며, 바닥난방과 천장형 에어컨이 설치됨. • 작은도서관의 도서(1,000권) 및 가구류, 실내운동시설(피트니스, 실내골프)의 운동장비(단, 소모성 또는 개인장구류 제외) 및 탈의실 라커류는 제공되며, 기타 주민공동시설의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음. • 본 단지의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 및 단지내 공용부를 입주민의 입주지원 및 하자 보수를 위해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준공 후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일부 공간은 입주고객의 입주관리 및 A/S업무를 위한 입주관리 사무실 및 A/S센터로 일정 기간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이므로, 일부 사용이 늦어질 수 있음. • 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의 세부시설은 변경될 수 있음
주택형별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세대는 대칭형으로도 시공되어 일부 거실, 침실, 주방/식당의 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시 동호수와 현관 앞에 설치되는 계단 및 E/V 위치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같은 주동 내 세대간 층단차이 발생구간의 외부 노출 세대는 단열재 적용에 의하여 상층부 세대와 하층부 세대의 사용면적이 상이할수 있음. (법적면적은 동일함) • 세대 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깊이 및 형태, 우물천장의 형태 및 크기는 천정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다소 축소되거나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상부 세대 비확장시 하부세대 천정에 추가 단열공사로 인하여 우물천정의 깊이 및 사이즈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엘리베이터에 면한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위세대에 설치되는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일괄소등스위치, 네트워크스위치, 콘센트 등),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 등은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옵션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의 종류 및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넘김 방지를 위하여 설계된 것으로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은 하자 사유가 아님 • 전면 비확장발코니, 다용도실 비확장발코니, 실외기실 등의 비확장 부위 및 현관의 바닥 레벨은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추가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배선기구, 조명, 온도조절기, 스프링쿨러, 환기디퓨저, 천정 몰딩 및 커튼박스, 걸레받이 등의 수량과 형태,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환기, 에어컨, 소방배관 경로 확보로 인하여 우물천정이 천정의 중앙에 위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주택형별로 우물천정의 크기가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부위의 경우 외측 벽체에 결로방지를 위해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코니 면적이 축소될수 있음. • 단위세대의 안목치수 및 발코니 면적산정 등의 법규는 기본형평면(발코니 비확장형, 단, 단열관련 기준은 관계법령에 따라 기본형 또는 확장형으로 진행가능)을 적용하며,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유무상 옵션(거실 및 복도 아트월, 주방벽 마감, 가구, 가변벽체, 창호 옵션 등의 유사한 사항 등)으로 추가되는 마감재, 가구, 기기, 벽체 등의 두께(치수)는 안목치수 산정 시 제외하여 기본형 평면의 안목치수를 적용함. [단, 안목치수 산정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마감 두께에는 벽체바름층의 두께 등 미세한 치수(걸레받이, 천장몰딩, 벽지 등)를 포함하지 않음] 예를 들어, 거실폭의 안목치수가 4,500mm일 때, 거실 아트월타일의 부착두께는 고려하지 않은 치수로, 석재 혹은 타일 시공 시 실측 치수는 해당자재 및 부착두께만큼 줄어들게 되고, 마감자재별 상이 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59A, 59B, 84A, 84B, 84C 타입은 별도의 대피공간이 계획되어 있지 않고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여 비상시 아래층 세대로 대피가능하도록 계획함. (피난기구는 상하층 좌우 교차 설치되어 같은 타입이라도 층별/동별 그 위치가 상이함) • 세대 내부의 일반가구, 주방가구 및 내부 벽체 마감 등은 인허가 과정 및 하자방지,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 도서의 치수와 상이할 수 있음.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에는 크랙하자 방지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마감재 부착 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음. • 타일 및 엔지니어드스톤, 인조대리석의 줄눈의 위치는 형별, 타입별로 상이하며 본 시공시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사이버 견본주택상 표현 위치 및 개소와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내부의 세부마감 디테일은 마감품질 확보를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선행세대로 사용될 수 있음. • 엔지니어드스톤, 인조대리석 자재의 이음부는 자재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하자와는 무관함. • 타입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가전 일체)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 인접 세대(상하좌우) 및 동일 세대 내부 각 부위별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 단열공사로 인하여 발코니 및 침실, 기타 일부 구간의 벽체 및 천정의 일부가 돌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부분의 커튼박스, 몰딩, 등박스, 걸레받이, 마감재, 가구 류의 형태와 위치가 확장형 기준층 도면과 상이할 수 있음. • 입주시 세대내 추가 실별가구(장롱, 불박이장 등) 및 가전설치시 마감재별 내경치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실측한 후 설치하여야 함.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는 실시공시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걸림은 하자사유가 아님 • 불박이 가구(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등)로 가려지는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 하드웨어(힌지, 레일 등)는 본 공사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당 단지의 세대 거실, 침실의 천장고는 2,500mm, 욕실은 2,400mm, 실외기실, 다용도실(턱높은구간 기준)은 2,680mm 로 계획하였으며, 복층에 면한 실외기실은 2,640mm, 84B, 84C 다용도실(턱높은구간 기준)은 2,350mm로 계획함. • 세대소음 기준치 이상으로 방문을 닫을 경우 진동으로 초음파 현관센서등이 작동될 수 있는 경우 하자사유가 아님.
제공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세대별 기본제공품목(일반가구, 주방가구, 마감자재, 기기류)은평형별 상이하며,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재가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분양홍보물, 인쇄물 및 카달로그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세대에 제공되는 가구/가전/마감 등과 관련하여 분양홍보물과 인허가 도서가 상이할 경우, 분양홍보물을 우선 기준으로 함. • 거실 아트월의 경우 해당위치에 대형타일(600*1200)이 시공되며 주택형별 타일의 색상, 컬러, 종류 및 나누기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카달로그 및 분양홍보물을 통하여 제공 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람. • 평형별 제공되는 주방TV의 크기 및 사양이 상이하오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59타입 이하 : 10인치 / 84타입 이상 : 13인치) • 전기오븐 및 욕실 엔지니어드스톤 에이프런은 84타입 이상 기본제공되오니 분양홍보물을 통하여 제공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람. • 거실 및 침실1 우물천장 내부에 설치되는 간접등은 평형별 제공 유무가 상이하오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59타입 이하 미제공 / 84타입 이상 제공) • 각 세대 타입에 따라 단열 및 벽체, 창호, 몰딩 및 걸레받이, 조명류 등의 설치 위치가 상이하며 가구와 마감재의 디자인과 품목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음. • 품목 및 자재류 등은 법규 및 제규정 변경, 정책 변경, 인허가, 단종, 수급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박이장류(신발장, 불박이장, 욕실장, 주방가구, 파우더장 등)와 접해있는 벽, 바닥, 천장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현관 신발장, 현관 창고, 복도팬트리, 주방가구, 각실 불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 수량, 제공여부 및 마감자재는 세대형별로 상이하며 일부 평면에는 가구가 미적용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주택형별 팬트리의 유무, 크기 및 제공형태가 상이하오니 반드시 계약시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주택형별 분전함 설치 위치에 따라 가구도어의 유무, 분전함 시공 부위 등이 상이하오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가구의 힌지, 레일 등의 하드웨어류는 본공사시 동등성능의 다른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방 싱크대 하부장의 온수분배기 가림판으로 인하여 수납공간이 줄어들고, 온수분배기는 본 시공시 세대별 위치와 크기가 변경 될 수 있음. • 배관이 설치되는 주방의 상부장은 수납장 내부의 깊이와 형태가 변경되거나 수납공간으로 사용 불가할 수 있음. • 주방가구 상판은 자재의 특성상 별도의 물턱이 없으므로 사용시 물튀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자의 사유가 되지않음 • 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람.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평형별 세대분전함의 위치가 상이하며, 세대분전함 위치에따라 설치되는 분전함 가구도어의 형태, 크기 및 깊이 등이 상이하오니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일부타입의 경우(59A, 59B), 다용도실 내 세탁볼 등 별도의 하부장이 제공되지 않으니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일부타입의 경우(59B), 평면 형태에 따라 드레스룸 및 시스템선반이 미제공되며 불박이장 형태의 수납가구가 제공됩니다. • 평형별 음식물쓰레기이송설비의 위치가 상이하며 해당 위치에 따라 제공되는 가구의 형태, 수납용량, 크기 등이 상이하며 다용도실 세탁볼 제공여부가 상이하오니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세대내 목문, ABS문의 상하부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시공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일부타입의 경우(59B, 84B), 평면 형태에 따라 제공되는 화장대의 크기, 형태 및 수납구성이 상이하오니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유사 이형타입의 경우, 가구의 길이 및 위치가 상이하며, 일부 설치불가 평면에는 가구가 미적용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시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형별 제공되는 가구의 수량, 크기, 형태, 마감자재 및 사양 등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카달로그 및 분양홍보물을 통하여 제공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람. • 주방가구 상하부장 뒷판의 상하부면은 마감이 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하자의 사유가 되지 않음. • 평형별 제공되는 가구의 수량, 크기, 형태, 마감자재 및 사양 등이 상이하오니 카달로그 및 분양홍보물을 통하여 제공 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람.
창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등의 창조사양은 인-허가 진행, 공동실험 및 외부입면계획에 따라 추후변경될 수 있으며, 외부창호의 프레임에는 도장이 적용될 예정임. • 내/외부 창호의 개폐방향 및 손잡이 디자인은 실시공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실외기실 루버창의 형태, 규격, 손잡이, 방충망 개폐방식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실외기실 루버창의 색상은 같은 타입이라도 동별/층별 상이하며, 루버외부에 세대환기를 위한 환기캡이 시공됨 • 창호는 PVC 조망형단창이 설치되며 유리난간이 고정되어 있어 이동이 불가능함. 이로 인하여 이사 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창호는 거실창의 경우 미닫이(Sliding) 창호이며, 이를 제외한 세대내 창호의 경우 여닫이(Tilt & Turn) 창호로 작동방식이 상이하며 본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경우 적법한 결로 및 단열 성능을 가진제품으로 설치될 예정이며, 환기 및 실내습도 관리 소홀로 인한 결로발생의 경우 하자의 사유가 될 수 없음. • 세대 내 목창호, 여닫이 창호 및 일반가구/주방가구 문짝의 개폐방향은 수분양자의 편의를 위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목문, ABS문의 상하부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시공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목문, ABS문의 힌지 및 손잡이, 손끼임이 발생하는 코너부위 디테일 및 손끼임방지장치의 사양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전기/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용도실 세탁기 설치구간의 바닥단차 및 다용도실 가구 형태, 적용 위치는 본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바닥 타일 줄눈의 위치는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함. • 일부 발코니에는 선홈통 및 배수구가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비확장발코니, 세탁기 등을 두는 다용도실, 실외기실의 경우 비난방 공간임 • 수전이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는 물청소를 위한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욕실에 바닥난방이 적용되며 샤워실, 욕조 하부에는 난방이 설치되지 않음. • 욕실 천장에는 욕실 환기용 배기팬 및 배관 점검용 점검구가 설치됨.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욕실 세면대, 양변기, 다용도실 수전, 주방개수대, 쿡탑, 주방후드의 위치는 시공중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본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주방 배기가 당해층 직배기 방식으로 인접세대에 냄새가 전달될 수 있음. • 세대 화장실 배관의 경우 층상배관으로 설치되어 추후 유지 및 보수 시 하부층 천장이 아닌 해당층 바닥을 통해 점검할 수 있음. • 당 사업장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지역난방)으로 별도 난방기 설치가 불가하며, 별도 개별 난방기 설치에 의한 훼손 및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은 수분양자에게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용도실 비확장발코니, 실외기실 등의 비확장 부위의 바닥레벨은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드레스룸 및 펜트리가 설치되는 세대는 온도조절기가 설치 되지 않으며 인근 방 및 거실의 온도조절기와 연동되어 조절됨.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욕실 출입시 문턱에 의한 신발걸림은 하자사유가 아님. • 주방 싱크대 하부장의 온수분배기 가림판으로 인하여 수납공간이 줄어들고, 온수분배기는 본 시공시 세대별 위치와 크기가 변경 될 수 있음. • 단위세대에 음식물쓰레기이송설비 투입구가 설치되는 하부에는 장비설치로 수납공간으로 사용이 불가함. • 주동의 외벽에 가스 입상배관이 노출 설치되며, 렌지후드 상부 가구장 일부를 사용하여 가구장 내부 공간이 축소될 수 있음. 또한, 다용도실에는 가스배관과 계량기가 노출 설치되며, 위치, 형태, 크기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에어컨의 냉매매립배관 및 응축수 배관은 시공되지 않으며, 유상유선 시스템에어컨용 배관만 시공됨. • 세대 내 천장속 배관 및 덕트 설치 등으로 인해 커튼박스의 길이 및 깊이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세대분전함, 통신단자함, 배선기구(일괄소등스위치, 네트워크스위치, 콘센트 등)의 설치위치는 본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주방의 식탁 위치는 입주 후 입주자의 식탁의 배치와 관계없이 설계시 적정위치로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는 계획되는 식탁 위에 설치되며 위치 변경은 불가함. 입주 후 식탁등의 설치 방향을 변경할 수 없음. • 스마트홈 IOT사업자의 서비스가 적용 될 경우 입주지원기간 종료시점으로부터 2년간 무상지원되며, 이후에는 유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음성인식스피커는 별도 구매품목이며 스마트홈IoT 가전연동은 서비스 사업자와 제휴된 가전에 한해 가능함. • 외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세대제어 및 정보조화가 가능한 '캐슬스마트홈'서비스는 3년간 무상지원되며, 이후에는 유상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세대분전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공 주택용 분전반 업무처리방법 특별강조 지시사항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될 수 있으며 추후 위치변경은 불가함. • 통신단자함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에 준하는 설계로 노출된 장소에 시설될 수 있으며 추후 위치변경은 불가함. • 세대 조명기구의 색온도는 4,000K(백색)으로 적용되며 고효율인증을 취득하므로 추후 6,500K 주광색 등으로의 색온도 변경은 불가함. • 주방 렌지후드 상부장은 주방 자동식소화기 설치공간이기 때문에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려움. • 실제 본공사시 세대 내 화장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정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가스배관이 설치되거나 후드의 배관이 설치되는 주방의 상부장은 수납장 내부의 깊이와 형태가 변경되거나 수납공간으로 사용 불가할 수 있음 •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함 • 세대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음 • 입주 후 세대에서 사용하는 대용량 전열기기로 인해 순간 전압강하 현상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는 조명기구 및 타 가전제품의 작동 이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됨
--	---

IX 기타 사항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7호 규제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2일이상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일 : 2025년 11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전쟁, 내란,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 파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되며,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회사에서 선수관리비를 부과합니다.

-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수분양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입주관리(분양대금, 보증부대출금 등 채무 미완제 시 입주 및 소유권등기의 거부, 채무변제의 독촉, 가압류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적절한 조치를 위한 통지 등을 말함)를 이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 2021. 2. 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월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은 60일 이상 제공할 예정입니다.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라 소비자 피해보상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로당, 경비실,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실내수영장, 실내골프클럽, 주민카페, 게스트하우스, 작은도서관-1, 작은도서관-2, 청소년도서관, 경로당-1, 경로당-2, 다목적실, 피트니스클럽, 사우나, 키즈스테이션 등),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 주차장 출입 가능한 제한 높이

- 지하1층 차량 통행로 2.5m, 주차구획 2.1m, 지하2층 차량 통행로 2.7m, 주차구획 2.1m, 지하3층 차량 통행로 2.3m, 주차구획 2.1m, 지하4층 차량 통행로 2.3m, 주차구획 2.1m로 설계되었습니다. (외부로부터 차량진입은 대지 남측 주출입구를 통해 지하1층, 대지 서측 부출입구를 통해 지하2층으로 각각 진입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회사명	감리금액	사업자등록번호
건축	(주)해우엔지니어링	6,044,500,000원	129-86-17145
전기	(주)동화이엔씨	1,162,373,300원	118-81-20761
소방 / 통신	(주)세정이에프씨	880,000,000원	202-81-50221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주택법」 제57조제1항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공시항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용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단위 : 원)

항목	1. 택지비	2. 직접 공사비	3. 간접 공사비	4. 설계비	5. 감리비	6. 부대비	7. 그 밖의 비용	합계
금액	264,141,545,404	26,970,564,091	10,401,576,704	1,136,289,879	429,265,065	3,181,611,661	14,803,581,167	321,064,433,971

2)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단위 : 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합계	57,572,109,185		
택지비 가산비	말뚝박기 공사비	289,100,404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암석지반 공사비	733,095,091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비	1,981,801,754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간선시설 및 도시공원의 설치비용	36,015,225,652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지장물 철거비용	669,394,433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감정평가수수료 및 검토수수료	1,017,581,400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정비사업 등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	7,489,955,149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택지와 관련된 경비	9,375,955,303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합계		14,803,581,167	
건축비 가산비	구조형식가산비	994,237,590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공동주택성능등급 점수에 따른 가산비	314,228,824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법정초과 복리시설 설치비용	703,996,950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사업시행인가조건에 따른 가산비용	942,425,085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인텔리전트 설비에 따른 가산비용	5,577,755,447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분양보증수수료	366,663,670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에 따른 가산비용	223,143,671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지하주차장 층고 상향	90,056,317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법령/조례에 따른 그 밖의 비용	5,591,073,613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주택법」 제57조제7항에 따라 공시하는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분양가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상한금액 이하로 확정된 분양가격 공시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여지가 되지 않습니다.

▣ 택지에 대한 감정평가액과 감정평가 기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5항)

(단위 : 원)

구분	감정평가법인 공감(※)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산술평균
감정평가금액	2,120,567,000,000	2,161,445,400,000	2,141,006,200,000

▣ 친환경 건축물 성능수준 표기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1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제3항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구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분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분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미적용 지역난방
	고효율 전동기(라목)	○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전기부분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다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내진 성능등급 표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제3항 및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내진능력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등급, VII-최대지반가속도)으로 표기)

최대유효지반가속도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 등급)
0.169(g)	MMI VII등급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공동주택 성능등급의 표시

<p>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p>	<p>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p> <p>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택 : 생활실악기별 주택건축 신 설 치 : 생활실악기별 주택건축시설조항 대 지 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34-18번지 일대(약동로 609) 성 능 등 급 	<p>녹색건축 예비 인증서</p> <p>녹색건축 예비 인증서</p>
<p>본 건축물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녹색건축인증 인증에 관한 「건축법 제64조 제1항, 2017. 7. 20.」 「녹색건축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증을 받았습니다.</p> <p>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p> <p>본 인증서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을 평가하고, 인증을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합니다.</p> <p>인증 기준</p> <p>인증대상 : 134-18번지 일대(약동로 609)</p> <p>인증일자 : 2024년 01월 01일</p> <p>주 소 : 서울 강남구 청담동 609 (청담동, 생활실악기별)</p> <p>층 수 : 지하 3층 지상 15~35층(19층)</p> <p>면 적 : 1,831.88㎡(546.66㎡)</p> <p>건축물의 주요 용도 : 공동주택</p> <p>설 치 자 : (주)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p> <p>인증등급 : 1등급</p>	<p>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p> <p>본 인증서는 공동주택의 성능등급을 평가하고, 인증을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합니다.</p> <p>인증 기준</p> <p>인증대상 : 134-18번지 일대(약동로 609)</p> <p>인증일자 : 2024년 01월 01일</p> <p>주 소 : 서울 강남구 청담동 609 (청담동, 생활실악기별)</p> <p>층 수 : 지하 3층 지상 15~35층(19층)</p> <p>면 적 : 1,831.88㎡(546.66㎡)</p> <p>건축물의 주요 용도 : 공동주택</p> <p>설 치 자 : (주)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p> <p>인증등급 : 1등급</p>	<p>녹색건축 예비 인증서</p> <p>본 인증서는 건축물의 녹색건축 인증을 평가하고, 인증을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합니다.</p> <p>인증 기준</p> <p>인증대상 : 134-18번지 일대(약동로 609)</p> <p>인증일자 : 2024년 01월 01일</p> <p>주 소 : 서울 강남구 청담동 609 (청담동, 생활실악기별)</p> <p>층 수 : 지하 3층 지상 15~35층(19층)</p> <p>면 적 : 1,831.88㎡(546.66㎡)</p> <p>건축물의 주요 용도 : 공동주택</p> <p>설 치 자 : (주)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p> <p>인증등급 : 1등급</p>

■ 주택도시보증공사 표준사업약정 관련

- 사업주체(시행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정비사업자금대출 관련 표준사업약정 체결과 동시에 장래에 발생할 사업주체의 분양대금 채권(조합원 및 일반분양 수입금을 포함)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합니다.
- 사업주체(시행사)는 분양계약 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조합원 및 일반분양 계약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요 보증내용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제 01292024-101-0005300 호	256,851,52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등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 관련하여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금액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대상이 아닙니다.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	시공회사
상호	청담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롯데건설 주식회사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101길 33, 3층 (청담동, 청담상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14길 29 (잠원동)
법인등록번호	114671-0031552	110111-0014764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청담 르엘 분양사업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 : 청담르엘 홈페이지 (<https://www.lottecastle.co.kr>)

■ 서류제출(우편접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101길 11, 207호 (청담동)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하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계약체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07, 6층 (청담동)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하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분양문의 : 1522-4370 (청담 르엘 분양사업소)